##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7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15기 전북기계 공업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등록장소 :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다. 기 간 : 2024년 3월 8일(금) ~ 3월 15일(금), 12:00까지
-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각 1통(사진 1매,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행정실 비치)

## 2. 위원선거

- 가. 선거일시 : <u>2024년 3월 27일(수)</u>, (18:00 ~ 21:00) ※ 교육과정설명회와 병행 (부재자 투표 : 2024, 3.25,(월), 10시~17시 / 핸드폰 문자로 개별 안내)
- 나.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4명
- 다. 선거방법: 직접투표와 부재자 사전 문자투표 병행
- 라. 선거인 명부 열람 : 2024년 3월 19일(화) ~ 22일(금). 행정실 총무부
  - ※ 후보등록 마감일 현재 입후보자수가 정수 이내이어서 무투표당선으로 확정된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 생략

2024년 3월 8일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